

自由貿易協定과 貿易關稅의 法的 課題

文俊朝*

차 례

I. 서 론

II. 무역관세분야의 쟁점별 분석

1. 의 의
2. 상품관세양허안 작성
3. 긴급수입제한(Safeguard) 조치
4. 반덤핑 및 상계관세
5.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세 및 관세
6. 원산지 규정

III. 우리나라 FTA의 특수문제로서의 개성공단 조항

1. 민족내부거래와 무역관세
2. 개성공단조항

IV. 결 론

【참고문헌】

* 韓國法制研究院 研究委員, 法學博士

I. 서론

90년대말 이후 특히 2000년대에 들어 세계무역의 70%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라 한다) 회원국간 거래로 이루어질 정도로 FTA는 세계적인 조류가 되었다. FTA는 두개 이상의 국가들이 자국의 관세 및 수입제한관련 제도를 상호 철폐·자유화하고 서비스시장 등도 개방함으로써 무역증진을 도모하게 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역외국가에 대해 차별적이고 보호주의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FAT는 협상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당사국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게 된다. 특히, 자국의 개개의 산업부문에 미칠 영향 및 국내 이해당사자에 대한 반대 기타 국민의 여론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 농축산물에 관한 개방정도이었다. 그러나, FAT의 상대방에 따라 협상의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는 분야는 대단히 많을 수 밖에 없다. 이 글에서는 FTA의 무역부문, 특히 무역관세 관련 분야만을 집중적으로 분석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향후 협상전략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II. 무역관세분야의 쟁점별 분석

1. 의의

FTA의 체결과 더불어 시행되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는 당사국간의 무역증대를 가져오게 된다. 품목별 효과는 종전에 어느 정도의 관세율을 부과하였는지의 여부 및 상대국가에 주된 수출품목과 수

1) 세계화시대에 지역적무역협정 급속하게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이제는 더 이상 WTO의 보편주의적 무역질서가 원칙이고 지역적무역협정은 예외일 뿐이라는 WTO와 지역적무역협정의 관계의 설정은 그 타당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Sherrilyn S. Lim, “The U.S.-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Fostering Confidence and Commitment in Asia” *Cal.W. Int’l L. J.*, Vol.34(2004), p.301.

입품목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²⁾ 현행 실행관세율과 양허에 따른 관세의 인하정도에 따라 수입수요가 달라지게 된다. 현재의 실행관세율이 높은 품목은 그 만큼 관세율의 변동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는 품목이라고 볼 수 있으며, 수입량의 증가에 따른 피해(구조조정, 수입품과의 경쟁 압력 등)가 크게 된다.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관세율의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클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관세철폐 또는 인하의 여부와 정도 그리고 시기를 타결짓게 된다. 또한, 어떠한 수입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을 확대하여 자국의 관련 사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증가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예컨대, 원자재, 자본재, 부품소재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경우, 그 파급효과가 FTA의 상대국가와 자국의 수입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FTA를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의 수입이 급감할 수도 있다. 이러한 면에서 FTA의 역외국가를 차별하는 측면을 가지게 되며 국제시장을 왜곡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³⁾ 그러나 역내국가 간에는 무역원활화를 통해 기업비용이 감소되며, 신속한 통관절차, 상호인정체제 구축을 통한 시험·인증절차 간소화로 기업 비용 감소를 기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한 부분이다. 이와 같이 FTA는 생산성향상과 무역창출효과, 무역전환효과 등을 통해 상호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된다.

그러나, 경합관계에 있는 산업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FTA 체결의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거나 장기간

2) 관세와 비관세조치는 국가가 수출입 무역을 통제하기 위하여 자주 사용하는 두가지 조치인 바, 여러 가지 명목으로 행하여지는 비관세조치에 비해 관세조치의 가장 큰 장점은 그것이 공개성과 계량가능성을 갖추어서 국내산업에 대한 보호의 정도를 명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문준조 우리나라의 FTA체결을 위한 체계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2005), p.52.

3) Lim, *op.cit.*, p.301.

에 걸쳐 나타날 수도 있다. 또한, 단기간에는 오히려 어느 일방 당사국에게 유리한 현상이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는 타방 당사국에게도 유리한 효과가 발휘될 수도 있는 등 FTA의 효과는 대단히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렵다는 측면도 무시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는 곧바로 자국 산업의 크고 작은 구조조정을 수반할 수 밖에 없으며, 특히 FTA의 효과로 수입이 증가하는 산업부문 종사자들의 피해를 동반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품목별 민감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면서도 보완장치도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 상대국의 특정 상품이 수입이 급증하는 경우의 그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에 관한 *safeguard*조항이나, 제3국으로부터의 우회수입 방지와 양국간 무역,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역내국가의 상품인정에 관한 원산지 규정과 원산증명서 발급절차, 양국간 무역 원활화를 위한 통관절차의 개선, 전자 무역거래(*paperless trading*)촉진 방안, 수입업자의 착오로 인해 납부한 관세의 환급절차, 덤핑관세규정 및 상계관세규정 등도 규정하게 된다. 그 밖에도 수입수량할당제(*import quota: IQ*),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등 비관세장벽 완화도 협상대상에 포함된다.⁴⁾

요컨대, FTA는 그 협상대상으로 농업 등 특정 분야를 배제하지 않고 전체 산업을 포함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산업 부문을 배제할 수도 있으나, 관세, 비관세 장벽, 무역규범, 경제협력을 포괄한다.⁵⁾ 대체적으로 포괄적인 무역자유화 및 원활화, 무역자유화를 보완·촉진하는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FTA의 일반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FTA가 무역분야외에 투자 등 다른 분야를 다루게 됨에 따라, FTA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단기적인 무역의 호

4) 이에 대해서는 문준조, *op.cit.*, p.119. 참조.

5) 미국이 체결한 FTA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측면을 확인할 수 있다. Ewell E. Murphy, Jr, "Charting the Transnational Dimension of Law: U.S. Free Trade Agreements As Benchmarks of Globalization", *Hou. J. Int'l L.*, Vol.27(2004), p.60.

름에만 초점을 맞출 수는 없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FTA 당사국의 국민의 타방당사국 상품에 대한 인식 역시 중요하다. 특히 일본과 같은 자국 상품에 대한 애착이 대단히 강하여 단순히 무역관세의 인하 기타 비관세 장벽의 완화만으로 우리 나라의 주요상품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지는 아니한다. 이와 같이 FTA의 체결은 법적·경제적 효과 분석외에도 그 나라 국민적 성향도 아울러 살펴야 한다. 아래에서는 우리나라가 그 동안 서명한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및 미국과의 FTA의 상품관세관련 규정들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2. 상품관세양어안 작성

(1) 의 의

FTA에서는 상품무역에 대하여 WTO 내국민대우원칙(GATT 제3조)을 적용하고, 상대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양허표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지 또는 감축하며, FTA의 자유화대상 품목의 최혜국대우 관세율이 인하될 경우 당사국은 FTA상의 관세율 인하에 대하여 협의한다는 내용을 두게 된다. FTA협상과정에서 타결이 가장 어려운 분야가 상품무역분야에 대한 관세인하 및 철폐이다. 주요 쟁점사항은 기본관세율 및 관세철폐 시기의 설정과 대상품목의 선정이다. 관세인하 이행기간 중에는 양자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통하여 다른 체약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을 제한할 수도 있다.⁶⁾

6) FTA의 시장개방으로 단기적으로 문제가 크다면 협정 이행초기 시장개방의 폭을 축소하여 구조조정의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특정 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면 이를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 특히 FTA하에서 자유화이행기간 동안 허용되는 양자가 세이프가드는 이러한 산업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FTA에서는 협정 이행초기에는 민감하지 아니한 품목위주로 자유화를 실시하게 된다. 예컨대, NAFTA에서 협정발효 즉시 철폐되는 품목의 비율은 50%이지만 이들 품목의 대부분의 컴퓨터, 통신장비 등 기존의 무관세 대상품목이거나 2% 미만의 저율관세가 부과되던 품목이었다.

(2) 실행관세율

산업경쟁력이 높은 나라가 그렇지 아니한 국가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관세양허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 양허로 인한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전략적인 양허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한편, 현행 실행관세율이 높은 품목은 그 만큼 관세율의 변동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는 품목이라고 볼 수 있으며, 수입량의 증가에 따른 피해(구조조정, 수입품과의 경쟁 압력 등)가 클 것이다. 또한 당연히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관세율의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클 수 있다. 예컨대, 싱가포르처럼 거의 모든 품목이 이미 무관세화되어 있는 국가와의 관세 양허는 한국에 일방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3) 단계별 관세철폐

흔히 FTA가 체결되는 즉시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취약한 역내 산업이 단기간 큰 타격을 입게 되므로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는 보통 5-15년에 걸쳐 단계적인 자유화를 실시할 수 있다. 산업별로는 공산품에 비해 농업, 수산업 등 기초산업에 대한 시장개방 협상이 어려워 품목별 민감도에 따라 보통 FTA 발효즉시, 5년후 철폐, 10년후 철폐, 15년후 철폐, 극히 민감한 분야에 대한 예외 등으로 분류된다. 외국의 FTA 체결 사례를 보면 공산품에 대한 대폭적인 양허를 하면서 농산물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품목에 대한 양허를 유보시켰다는 점과 선진국이 개도국보다 자유화의 폭과 범위를 보다 확대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⁷⁾

7) Ralph Fischer, "The Expans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y International Agreement: A Case Study Comparing Chile and Australia's Bilateral FTA Negotiations With the U.S", *Loy. L.A. Int'l & Comp. L. Rev.*, Vol.28(2006), p.158.

NAFTA에서는 무역 및 농산물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역외국가에 대한 관세 및 기타 비관세 장벽은 제거되지 아니하였다.⁸⁾ 멕시코는 NAFTA발효와 동시에 자국 수입곡물의 50%에 대하여 관세를 폐지하였으며 나머지 50%는 10년에 걸쳐 폐지하였다. 다만, 옥수수과 마른 콩(bean), 오렌지쥬스와 설탕 등과 같이 멕시코와 미국에 민감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를 폐지하고 있다.⁹⁾ 또한 3국은 국내가격지지(price-support) 정책이 무역을 왜곡시키지 아니하도록 한다는데 합의하였다. 이와 같이 농산물 무역의 자유화는 국내적인 요인 때문에 또는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불하는 모든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어려운 문제이다.¹⁰⁾

미국·싱가포르 FTA에서는 맥주와 알콜음료에 관한 네 가지¹¹⁾ 관

8) Jisu Kim, "Impact of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on East Asia : A Korean Perspective", Am. U. J. Int'l L & Pol'y, Vol.8(1993), p.887.

9) 미국·요르단과의 FTA에서도 상품 무역에 대해서는 10년내에 거의 모든 관세를 제거하되 1단계: 2년내에 5% 미만의 관세를 인하. 2단계 4년내에 5% 내지 10%의 관세를 인하한다. 3단계: 5년내에 10% 내지 20%의 관세를 인하한다. 4단계: 10년내에 20% 이상의 관세를 인하하도록 하고 있다. Howard Rosen, "Free Trade Agreements as Foreign Policy Tools: The US-Israel and US-Jordan FTA.", (ed) Jeffrey Schott, *Free Trade Agreements: US. Strategies and Priorities*, (Washingt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04), p.185.

10) 예컨대, 한국·일본 양국간의 FTA협상에 있어서 최대의 쟁점은 일본의 농수산물 시장개방 문제인데, 일본은 농수산물분야의 자유화품목의 비율을 50%정도로 그치려 하고 있는데 대하여, 한국측은 90%이상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상호간에 관세양허안의 교환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한국·일본 양국간의 대립에는 양국간의 협상방식의 차이가 협상을 어렵게 하는 근원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즉, 일본은 최소한의 개방목표를 제시한 후 협상과정에서 개방대상 품목을 늘려가는 "리퀘스트(request)"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해 온 데 비하여, 한국은 최대의 개방목표를 제시한 후 민감한 품목을 제외해 가는 "오퍼(offer)"방식을 채용해 왔기 때문에, 양국간의 의견충돌은 예견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11) 이와 같이 남아 있던 네 가지 관세는 ASEAN Free Trade Area내에서의 무역 및 뉴질랜드, 일본 및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미국과의 FTA에 의하여 이들과의 무역에 대해서는 폐지되었다. 그러나, 싱가포르가 사회적·환경적 이유로 증류주(distilled spirits) 및 와인, 담배상품, 자동차(모든 수입자동차) 및 휘발유에 대해서는 높은 간접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싱가포르 FTA 제2.9조에서 싱가포르

세를 예외로 하고 싱가포르는 수입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품무역에 관한 제2조의 규정은 싱가포르의 양허내용이 그다지 많지 않다.

(4) 한국이 체결한 FTA와 개방상품품목과 관세양허 문제고찰

1) 한국 · 칠레 FTA

양국간의 협상과정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농가의 보호를 위하여 일부 농산품에 대한 관세양허 적용배제를 제한하였으나 농업국인 칠레는 예외를 두는 것에 반대하였다. 결국 우리나라는 칠레로 수출되는 일부 공산품에 대한 관세양허의 배제를 대가로 일부 민감한 농산품에 대한 관세양허의 적용배제를 얻어내었다.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의 방향에 대한 합의에 기초하여 다시 양국은 관세양허표의 수정과 조정을 거쳐 2002년 10월 24일 협정문을 타결시켰다.¹²⁾

FTA의 협상과정에서는 FTA 체결당사국간의 산업과 무역구조가 상호 보완적이냐 아니면 경쟁적이냐에 따라 당사국들이 고려하여야 할 요소 및 협상대상이 되는 문제들이 많아지게 된다. 한국과 칠레간의 FTA는 양국간의 산업 및 무역구조는 보완적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는 수입되는 또는 국내의 증류주에 대하여 간접세를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하였다. Sidney Weintraub, "Lessons from the Chile and 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s", (ed) Jeffrey Schott, *Free Trade Agreements: US. Strategies and Priorities*, (Washingt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04), p.85.

12) 한편으로 칠레와의 FTA 협상은 농업부문과 노동조합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농업인들은 첫 번째 FTA가 결국은 국내 농산물시장의 개방을 요구하는 유사한 협정의 체결을 불러올 것이라는 의구심 때문에 칠레와의 FTA 체결에 강하게 반대하였다. 칠레와의 FTA는 4년의 협상을 거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2004년 2월 국회의 비준을 얻어 2004년 4월 1일 발효하게 되었다. 동 협정은 상품과 서비스의 무역에 실질적인 자유화를 달성하였으며 양국의 경제구조의 분석과 협상의 결과를 보면 칠레농산물에 의한 한국농업에 대한 피해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 한국에서는 관련 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으며 농업부문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쉽게 협상점을 찾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¹³⁾

양국이 합의한 시장접근양허안은 농업을 포함한 전 산업이 자유화의 대상으로 포함되고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양국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 또는 감축하기로 하고 GATT 제11조에 의하지 아니한 쿼터, 수입허가 등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농산물은 WTO 농업협정 관련 규정을 준용하기로 하였다.

한국과 칠레는 품목수 기준으로 각각 약 96%에 해당하는 품목의 수입관세를 10년이내에 철폐하기로 함으로써 자유화 비율면에서 균형을 이루었으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자유화 일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였다.¹⁴⁾ 우리 나라의 관세양허 카테고리는 농산물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바 농업의 근간이 되는 주요 품목은 예외 또는 부분 개방하고 민감도에 따라 무역자유화의 예외로¹⁵⁾ 설정하거나 계절관세부과¹⁶⁾, DDA 협상타결후 논의하거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일정량의 쿼터물량을 배정하는 품목으로 설정하였다. 칠레측 양허안은 즉시철폐, 5년내철폐(시멘트,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등), 7년내철폐, 10년내철폐(고무제품, 철강, 섬유·의류 등)¹⁷⁾, 13년내철폐, 자유화 제외 등 6개로 구분된다.

13) 우리나라는 농업부문에 대한 잠재적 산업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는 바, 칠레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농산품은 포도, 키위, 토마토 등의 일부 과일에 한정되어 있었다. 포도의 경우 칠레는 지리적으로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어서 한국과 계절이 정반대였으며 칠레 역시 한국과의 FTA 체결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한국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한국이 다른 이웃아시아 국가들과 밀접한 연결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14) 기간별로는 즉시철폐, 5년철폐, 7년철폐, 9년철폐, 계절관세(국내비생산기간에 한해 10년 철폐), 10년철폐, 16년철폐, TRQ+DDA이후 논의, DAA논의, 자유화제외 등 10개로 구분된다.

15) 우리나라는 사과, 배 등 과일류 일부 민감한 품목을 자유화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킴으로써 농업계의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하였다

16) 11월-4월까지 수입되는 포도에 대해 관세를 10년에 걸쳐 균등 철폐한다.

17) 협상초기부터 한국은 공산품에 대해 협정발효즉시 철폐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전기동(7년내 철폐)을 제외한 전 품목을 협정 발효즉시 철폐하는 것으로 타결하였다. 반면에 칠레측은 6개 양허 카테고리 모두에 제조업 품목을 배정하고 즉시 자유화대상품의 경우 한국의 對칠레수출비중은 약 67%에 해당한다. 한편 한국의 對칠레수출의 5-6%에 해당하는 세탁기와 냉장고는 자유화의 예외로 설정하였다.

2) 한국 · 싱가포르 FTA

양국의 주요 수출입품목의 무역구조는 상호 중첩되고 경쟁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싱가포르가 기본적으로 자유무역화정책을 채택하고 있었고 중개무역국가였다는 특성도 상당부분 FTA의 타결에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FTA체결하기 전에도 싱가포르의 평균관세율은 6.5% 수준이지만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실행관세율(applied tariff) 0%를 적용하고 있었으며, 비관세장벽¹⁸⁾의 경우에도 그다지 높지 아니하였다. 다만, 주요 비관세 장벽으로는 공공의 안녕질서, 보건,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을 금지(예: 마취성 술 및 담배, 씹는 껌, 권총형 담배 라이터 등)하고 있었으며 환경보호를 위한 일부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었을 뿐이다. 이 협정에 의하여 싱가포르는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거의 모든 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도 농산품¹⁹⁾과 일부 공산품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한국은 향후 10년동안 싱가포르 상품의 91.6%에 대하여 수입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게 되었다.

한편 북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상품은 한국에서 생산된 상품과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되는 이른 바 개성공단조항을 최초로 삽입하게 되었다. 개성공단 등에서 생산된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수입측면에서는 제3국 상품이 싱가포르를 통해 우회 수입되는 것은 늘어날 전망이다.

18) 비관세장벽(NTB:Non-Tariff Barriers)이라 함은 자유무역을 저해하거나 교란하는 관세이외의 방법으로 정부가 자국상품과 외국상품(또는 국내시장과 외국시장)을 차별하는 직·간접적인 선별적 규제를 말한다.

19) 이 조항은 칠레와의 FTA와 관련하여 한국의 농업부문으로부터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던 경험을 살펴 포함된 것이다. 싱가포르와의 FTA는 우리 농업계가 ‘농업을 제외한 FTA체제 구축’ 차원에서 그동안 정부에 비공식적으로 제안해 왔던 사안이다. 특히, 앞서 체결된 일본-싱가포르FTA에서도 농업을 자유화의 예외분야로 설정한 바 있었다. 싱가포르가 농업분야 자유화에 관심이 없다는 점에서는 농업 제외가 가능하나, 이 경우 향후 우리나라가 추진할 다른 지역과의 FTA에서의 농업개방 문제와 상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업분야자유화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한국 · EFTA FTA

한국은 EFTA에 99.1%의 상품을 양허하였으며 그중 86.3%의 상품은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였다. 이중 공산품은 100% 관세양허를 부여하였으며 91.1%는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한다. EFTA는 한국의 모든 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한편, 민감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자유화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일부 품목은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였다. 그러나, 역시 다른 상품부문에 비해서 농산물의 양허는 그 비율이 다소 낮은 편이며 이는 다른 국가들의 FTA에서도 일반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4) 한국 · ASEAN 상품무역협정

이 협정의 일반품목에 해당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방식에 관한 부속서에서는 관세철폐대상 품목을 열거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유연한 관세철폐스케줄에 의하게 된다. 그러나,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속서를 두고 있으며 일반민간품목과 초민감품목을 구분하여 각각 관세인하폭, 최소수입량, 개방화예외품목 등을 5개의 군으로 나누고 있다.²⁰⁾

5) 한국 · 미국과의 FTA

2001년 한국과 미국간의 FTA 교섭비용과 유리한 점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농업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 대하여 시장개방을 하도록 한다면 양국의 경제적 이득이 클 것이며, 양국 각각의 기존 무역 흐름이 양국간의 무역량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변화될 것이라고 한다.²¹⁾

20)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ASEAN EFTA주요 내용 - 기본협정·분쟁해결제도·상품무역협정』, 2007, pp.20-21.

21) Inbom Choi and Jeffrey J. Schott, "Korea-US Free Trade Revisited", Jeffrey J. Schott(ed.), *Free Trade Agreement: US Strategies and Priorities*,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04), p.173.

지난 수십년간 제조업분야의 상품은 미국의 대한국 수품상품·서비스의 약 60%(주로 전기기계 및 장비, 항공기, 과학장비, 유기화학물 등)이며 한국의 대미수출품의 80%(주로 자동차, 통신장비, 반도체, 컴퓨터 및 부품과 의류)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2002년 한국과 미국간 무역의 30%가 Harmonized Tariff Schedule chapter 85에 속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즉 전기기계·장비(주로 반도체와 컴퓨터와 부품)이다. 컴퓨터 칩 무역의 경우 양국은 확실히 “동일산업내 무역”(intra-industry trade)이라는 유형을 보여주고 있으며 미국은 하이테크 프로세서와 칩을 한국은 주로 메모리칩을 수출하고 있다. 22)

실제로 한국의 “동일산업내 무역”은 오랫동안 꾸준히 증가하여왔지만 미국과의 그러한 무역량은 한국의 다른 무역대상국보다는 낮은 편이다. 이러한 추세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바 동일산업내 무역의 확대는 어느 정도까지는 비동일산업내 무역보다 일반적으로 조정(adjustment)문제가 훨씬 작으며 향후의 무역마찰의 가능성도 낮기 때문이다.

미국과 한국간의 무역관계는 그 규모로 보아 필연적으로 많은 무역마찰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작성한 한국의 대외무역장벽에 관한 2003년 보고서에서 23페이지에 달하며 미국이 FTA를 체결하거나 체결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많은 분량이며 일본, 중국 및 EU만이 한국보다 많다.23)

가장 지속적인 두드러진 문제는 자동차분야, 반도체 부문, 반도체 및 농업과 관련되어 있다, 미국측으로서는 한국내의 자동차의 수입 및 판매에 대한 제한이 여전히 미국회사의 주된 우려사항이라고 보아왔다. 자동차에 높은 관세는 제조업분야 상품의 평균부과액과 거의 같지만 미국 자동차의 판매는 주로 수입품인 대형자동차에 부담이 가중되는 판매세에 의하여 더욱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22) *Ibid.*, p.177.

23) *Ibid.*, p.179.

미국은 한국정부가 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보조금이 미국내의 새로운 상계관세관련 제소를 야기할 수 있다. 2003년 4월 미국 상무부는 하이닉스 반도체의 미국수입이 50%이상의 상계관세 적용대상이 된다는 예비결정을 발표하였다. 그 밖의 미국의 관심사항은 영화상영권터,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과도한 규제 및 의약품 가격책정관행 등이다²⁴⁾. 농업분야에서 한국은 여전히 쌀시장 접근을 대단히 제한적이며 기타 농작물의 수입관세도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하여왔다.²⁵⁾

한국·미국FTA는 모든 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94% 품목은 3년이내 철폐하고, 기타는 5년, 10년, 12년 15년 등으로단계적으로 철폐한다. 미국수출품에 대한 물품처리수수료제도도 폐지되지만 한국의 조정관세는 유지되며 기준세율도 인정된다. 한편, 동 협정은 반덤핑 및 보조금 상계관세 또는 다자간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발동을 자제하거나 견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양자간 긴급수입제한조치제도에 의하여 농산품 등에 대하여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2년까지 유지할 수 있으며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²⁶⁾ 농산품중 쌀 기타 쌀과 관련된 상품은 자유화로부터 배제하였으며 특히 한국에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예외적 취급을 하도록 하고 있다. 즉 현행관세를 유지하거나 식용과 가공품의 세번분리를 통하여 별도의 취급을 하고 계절관세제도를 도입하였다. 농산물과 섬유분야에 적용되는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제도를 둔 것도 눈여겨 볼만하다. FTA의 발효로 인한 급격한 수입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섬유분야의 경우 관세제거후 10년동안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4) USTR Report 2003, pp.239-63.

25) IChoi and Schott, *op.cit.*, p.182.

26) 한국·미국 FTA 제10.1조.

3. 긴급수입제한(Safeguard) 조치

한국·칠레 FTA는 농산물 수입급증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 또는 시장교란이 야기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FTA상의 관세인하 정지 또는 최혜국대우관세 및 FTA상의 양허표의 기준관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세인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특한 것은 농산물만이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경과기간중 일방 당사국으로부터 관세철폐에 따른 수입증가가 국내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경우, 타방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다만, GATT 94 XIX조 및 WTO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FTA상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며 이에 따른 조치는 FTA상의 분쟁해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농산물 수입급증으로 인한 “피해 또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에 관한 객관적 판단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긴급수입제한조치라 함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불가피하게 허용되는 조치라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시장점유율, 가동률, 고용 등 객관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한국·칠레 FTA는 발동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잠정 조치도 120일동안 허용되는 반면에 WTO 세이프가드는 최대 4년으로 하되 8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피해 및 우려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200일까지 잠정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또한 사전협의 전의 수출국의 대응조치와 관련하여 한국·칠레FTA는 수출국의 요청이 있으면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되, 30일이내에 합의가 안 된 경우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고 수출국은 보복조치를 취하여 동등한 수준의 양허정지 및 관세인상을 할 수 있는 반면에 WTO 세이프가드는 사전협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30일이내에 합의가 안된 경우 세

이프가드를 발동하고 수출국은 보복조치를 취하여 동등한 수준의 양허정지 및 관세인상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절대적인 수입증가가 이루어져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경우에는 3년간 보복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²⁷⁾

한국·싱가포르FTA에서는 양자간 긴급수입제한조치로서 FTA상의 관세인하 또는 철폐로 타방 당사국 원산지 상품이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추가적인 관세인하의 정지, 관세율인상을 할 수 있으며 모든 조사는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칠레 FTA와는 달리 그러한 잠정조치의 존속기간은 20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WTO 세이프가드조치협정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4. 반덤핑 및 상계관세

한국·칠레FTA에 의하면 반덤핑 및 상계관세와 관련하여 당사국들은 WTO 및 GATT 1994 규정등 WTO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며 이에 따른 조치는 FTA상의 분쟁해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은 11개의 부와 7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정부 보조금을 받은 상품과의 경쟁으로 인하여 외국 상품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보조금을 상쇄하기 위하여 상계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공정한 무역행위가 아니다.

27) 일본-싱가포르EPA에서는 동 협정에 의한 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의 결과로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산업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혹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양국간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수입수량제한은 실시하지 않고, 발동기간은 1년(단,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하에서는 최장 3년) 이내로 하며, 협정발효후 10년내에 한정된 경과조치로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이라²⁸⁾ 함은 WTO 회원국의 영역내에서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금전적 기여가 제공되고 있고 그러한 기여가 “혜택”을 주는 것인 경우를 말한다. 금전적 기여라 함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정부소유기업까지 포함)에 의하여 직접적 자금이전, 세입포기 또는 징수불가, 일반적 인프라 이외의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 물품의 구매 등을 말한다. 정부가 조달기관에 지급하거나 민간기구로 하여금 금전적 기여를 제공하도록 하는 위탁, 지시 행위도 포함된다. 한편 “특혜”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상계조치의 목적상 혜택의 존재여부와 금액의 범위에 대한 판단은 동 FTA의 다른 조항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5.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세 및 관세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가 조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의 문제는 큰 관심의 대상이 되어온 문제이다.²⁹⁾ 전자상거래가 국가를 달리

28) 보조금의 유형은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금지보조금은 회원국의 이익에 가장 큰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수출보조금 및 수입대체 보조금이 있다. 둘째, 조치가능보조금은 금지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익을 제기할 수 있는 보조금 유형으로 잠재적 제소 및 상계조치의 대상이 된다. 셋째, 허용보조금은 WTO 회원국간에 광범위하게 제공되는 정부 지원보조금으로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성된다. 1) 기업 또는 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이 행하는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이러한 지원이 산업적 연구비용의 75% 또는 경쟁이전 개발활동 비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①연구비용, ②전적으로 또한 연구적인 연구활동을 위한 장치, 설비, 토지 및 건물 비용, ③구입된 연구, 기술지식, 특허권 등을 포함하여 연구활동만을 위해서 이용되는 자문 및 이에 상응한 서비스의 내용, ④연구활동 결과로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추가적 경상비용, ⑤연구활동 결과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다른 운영비용 등에 한정된 보조금,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회원국 영역내의 낙후지역에 제공되고 수혜대상 지역내의 특정적이지 아니한 지원으로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지원 및 3) 기존환경시설 개조 비용의 20%를 상회하지 아니하는 환경관련 보조금이다.

29) 미국에서의 이 문제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Austan Goolsbee & John Zitttrain, “Evaluating the Costs and Benefits of Taxing Internet Commerce”, *Nat'l Tax J.*, Vol.52(1999), p.413. 참고(여기에서는 판매세의 2%미만의 손실이 수년에 걸쳐 발생할 것이라는 계산결과를 내놓았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에서의 조세 문제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Susan Teltscher, *Revenue Implications of Electronic Commerce: Issues of Interest to*

하는 익명의 당사자들간에 국경을 초월하여 행하여진다는 사실 때문에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세문제를 놓고 논쟁이 지속될 것이다.

한편, 디지털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문제는 상품 분류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데, 만약 디지털 전송물이 GATT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진다면 관세부과 논의는 필요가 없지만, GATS적용을 받을 경우에도 내국민 대우 부문에 양허를 하지 않는다면 수입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싱가포르 FTA 제14.3.1조에는 전자적 전송(transmission) 형태로 진행되는 On-line전달 형태의 당사국간 거래의 경우 무관세로 하고 있다.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전자전송 형태의 디지털 제품에 대한 영구적인 무관세를 규정하고 있다. 한국·싱가포르 FTA 제14.4.1조는 “각 당사국은 전자적 전송에 의한 타방 당사국의 디지털 제품의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관세 기타 세금, 수수료 또는 부과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무관세를 규정하고 있다. 30)

6. 원산지 규정

(1) 의 의

FTA의 원산지규정은 어느 정도까지 당사국의 영역에서 공정을 수행하여야 FTA의 특혜관세 적용대상이 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며 원산지 규정은 양국의 산업경쟁력과 무역규모를 근거로 하여 상호 무역의 활성화, 우회수입방지, 외국인투자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Developing Countries, UNCTAD, Apr. 2000) 참조(여기에서는 조세감소가 일부 국가에서는 더 높게 나타나지만 평균적으로 개개의 국가에서 총 1%미만일 것이라는 보고를 하고 있다).

30) Weintraub, op.cit., p.91.

여 정하여야 한다. 원산지의 중요성으로는 1) 정부의 재정수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관세는 정부의 재정수입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부정확한 원산지 규정 및 관리는 정부 재정수입으로서 관세의 역할과 기능을 약화할 수 있다. 2) 자국산업보호 역할을 한다. 자국산업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원산지규칙은 FTA의 당사국이 아닌 제3국이 FTA의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³¹⁾

(2) 원산지 결정의 혼합기준

원산지 결정 기준 및 판정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즉, 역내국에서의 일정한 부가가치 창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부가가치기준, 원재료와 완성품의 관세번호가 다를 경우 실질적인 변경이 행하여지는 관세번호 변경기준, 제조가공작업이 행하여지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가공공정기준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를 높게 책정하면 할수록 역내로의 무역전환 투자전환효과는 커지게 된다.

지난 반세기 이상 통신과 운송의 기술혁신에 따라 더욱 많은 회사들이 상품을 생산하는데 여러 국가의 재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상품의 가공, 조립, 포장 또는 완성이 여러 국가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들은 보다 치밀하고 복잡한 원산지 규칙을 마련하게 되었다.³²⁾ 1974년의 *International Convention of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는 상품의 원산지는 최종적인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한 국가라고 정의하고 있다.³³⁾ 실제에 있어서 “실질적 변형”의 결정은 다음 세가지 기준의 하나를 적용하여 내려진다.

31) John Coyle, “Rules of Origin Instruments of Foreign Economic Policy :An Analysis of the Integrated Sourcing Initiative in the U.S. 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Yale J. Int'l L.*, Vol.29(2004), p.549.

32) *Ibid.*, p.548.

33) *Ibid.*

첫째, 원산지국에서 국내부가가치의 최소 비율을 요구하는 국내재료 기준이다. 양 당사국에서 수확·채취한 식물 및 광물, 출생·사육한 동물, 양당사국에서 생산된 원재료로 처음부터 양당사국에서 가공한 물품등과 같은 양당사국에서 완전히 생산된 경우는 당연히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된다.

둘째, 원산지국에서 특정한 가공작업을 거치도록 하는 기술적 기준이다. 제3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가공한 경우로서 실질적인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이루어진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는 바, 한국·칠레 FTA에서는 실질적인 변형의 판정과 관련하여 세번변경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부가가치 기준 및 특정공정 기준으로 보완하고 있다.

셋째, 상품이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System(Harmonized System: HS)상의 세번을 원산지국에서 변경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세번변경(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기준³⁴⁾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criterion)은 원재료와 완제품을 비교하여 물품의 국제적인 분류기준인 HS코드가 일정한 기준이상으로 변경될 경우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는 바, 현행 기준은 농산물의 경우에는 엄격한 2단위 변경(CC)이 많으면 공산품의 경우 4단위(CTH), 6단위(CTSH) 변경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부가가치기준(value-added criterion)은 특정제품의 전체 가치중에서 일정수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이며 우회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번변경기준과 보완적으로 사용하며 세번변경기준 적용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가가치기준을 단독으로 사용한다.

특정가공공정기준(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은 제조공정중 특정한 공정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부품을 사용한 국가들 원산지로 하는 것으

34) Moshe Hirsch, "International Trade Law, Political Economy and Rules of Origin- A Plea for a Reform of the WTO Regime on Rules of Origin", *J. World Trade*, Vol.(2002), p.171, 177.

로서 예컨대 TV의 경우 브라운관 생산국이 원산지가 되도록 하는 예가 대표적인 것이다. 이 기준을 우회수입방지를 위하여 세번변경기준과 보완적으로 사용되며 섬유분야에서 주로 규정하고 있다.

특수한 경우의 원산지 인정방식은 첫째 최소허용(*de minimis*) 수준과 대체가능물품(*fungible goods and materials*)기준이 있는 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전체 가격의 8%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역내산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이고 둘째는 구분하기 어렵고 대체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물품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원산지 결정을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등 제고관리법에 따라 행하여진다.

대부분의 FTA는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의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예컨대, 섬유와 자동차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³⁵⁾ 또한 어떠한 FTA에서는 이른바 “혼합기준”(hybrid tests)을 적용하고 있는 바, 예컨대 국내부가가치 내용물(*content*)의 최소한의 비율 기준, 실질적인 변형에 의한 세목변경 기준 모두를 적용한다.³⁶⁾ 사실상, 상기의 어떠한 기준도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각종 기준에 내재하는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많은 경우에 어느 원산지 기준에 의하면 특혜관세의 대상이 상품이 다른 기준에서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3) 주요 FTA의 원산지 규칙

NAFTA에서도 엄격한 원산지규칙을 설정하였다. 역내무역으로 인정받으려면 상품은 주도적으로(*predominantly*) 역내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NAFTA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자동차산업에 있어서 NAFTA 역외국가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원산지 규정을 적극 활용하

35) 예컨대, 한국·칠레 FTA에서 혼합통조림과 혼합주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80%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36) Coyle, *op.cit.*, p.549.

고자 높은 현지 조달비율을 요구하여 양자간에 65%기준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자동차 산업에서 일본기업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공장을 건설하여 수입부품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미국으로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경한 태도를 보여 결국 62.5% 기준이 채택되었다.³⁷⁾ 즉,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의 순수비용(net cost)중 북미재료가치 62.5%라는 기준을, 기타 차량 및 자동차 부품은 60%가 북미에서 생산되었어야 역내원산지 상품으로서 무관세의 특혜를 받는다³⁸⁾.

미국·싱가포르 FTA는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격과 관련하여 “당사국 일방 또는 쌍방 영역에서만 전적으로 획득 또는 생산된”(wholly obtained or produced entirely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것으로서 Annex 1에서의 상품특정 원산지 규칙에 부합되거나 또는 달리 제3조상의 원산지 상품으로 규정된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본다. Annex 1상의 관세분류표상의 변경(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이 행하여지지 아니한 상품의 경우에는 당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액이 상품의 조정된 가액(adjusted value of the goods)의 10%를 초과하지 않고 원산지 상품으로서의 다른 모든 자격 기준을 충족시켜야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싱가포르 정부는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불하지는 않지만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수출지향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³⁹⁾

37) 멕시코는 NAFTA의 가맹국이면서 EU와도 FTA를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기 전까지 일본 기업들은 EU나 미국의 기업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담하는 등 불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FTA미체결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본은 멕시코와 EPA/FTA를 2004년 9월 체결하였고 2005년 4월 1일 발효하였다.

38) NAFTA 제10조하에서 자동차 산업은 최초 4년동안 역내재료기준을 57%까지 인상하고 그후 4년동안 62.5%에 달하도록 하였다. 협상과정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일본의 기존 자동차산업투자와 향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그러한 재료기준을 낮추고자 하였다. 사실 1988년 미국·캐나다FTA는 50%의 역내재료기준을 설정하였으나 미국의 자동차산업은 그 동안 그 기준이 너무 낮아 일본과 다른 국가의 자동차부품의 수입을 억제하는데 실패하였다는 이유로 70%이하의 역내재료기준을 희망하였다(Kim, *op.cit.*, p.887).

39) Lim, *op.cit.*, pp.334-5.

한국·칠레 FTA는 NAFTA, EU-칠레 FTA를 기본으로 하였으나 국내산업구조와 칠레와의 무역관계 등을 고려하여 원산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제3국 우회수출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산물은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제3국산 원재료를 수입하여 칠레에서 가공할 경우 칠레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품목별로 결정하는 것이며 상세한 품목을 부속서에서 정하고 있다.

한국·싱가포르FTA 제4.4.1조(역외가공)에 의하면 “..... 부속서 4C에 열거된 상품은 당사국에서 수출된 재료에 일방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생산 또는 가공 공정을 거친 후 당사국으로 재수입된 경우에도 ①비원산지 투입요소의 총가액이 최종제품 관세가액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②원산지 재료의 가액이 최종제품의 관세가격의 45% 이상이고 ③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된 재료가 그 당사국의 영역 밖으로 수출되기 전에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획득 또는 생산되었거나 제4.16조의 불인정 공정 외의 생산 또는 가공 공정을 거쳤고 ④수출된 재료의 생산자와 최종제품의 생산자가 동일하고 ⑤재수입된 상품이 수출된 재료의 생산 또는 가공 공정을 통하여 획득되었고 ⑥생산 또는 가공의 최종 공정이 당사국의 영토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본다.

이러한 역외가공조항은 우리나라가 칠레와 체결한 FTA에는 없다. 싱가포르와의 FTA체결과 관련하여 무역업계에서는 싱가포르의 재수출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해 제3국 제품의 우회수입을 억제할 수 있도록 특혜원산지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라고 요구한 바 있고 해당국 제품만을 역내산으로 인정하고 제3국으로부터의 우회수입을 방지할 수 있는 원산지규정이 FTA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칠레 FTA의 원산지 일반기준을 살펴보면 농산물의 경우에는 국내산업보호를 위하여 가급적이면 세번변경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부가가치기준을 높게 규정한 반면에 공산품의 경우에는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가급적 세번변경 기준을 완화하고 부가가치기

준을 낮추어 규정하고 있다.⁴⁰⁾

일부 원산지제도의 복잡성에 주목하여 국가들이 FTA 체결과정에서 협상하는 원산지 규칙이 새로운 무역장벽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⁴¹⁾ 어떤 학자는 GATT가 과거 50년동안 무역장벽을 자유화하여 왔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국내산업을 상당한 수준으로 보호할 수 있는 차선의 방법으로 원산지 규칙을 좁게 창출해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⁴²⁾ 누적(cumulation)에 관한 규정은 생산재료의 투입이 이루어지는 지리적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생산자들이 비용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부분적인 시정방법이 되고 있다.⁴³⁾ 누적규정은 대단히 복잡하기는 하지만 제한적인 원산지 규칙이 자유무역을 촉진하지도 저해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을 가진 경제학자들은 값싼 공급원으로부터 재료를 획득하는데 차선의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다.

40) 한편, 미국이 체결한 FTA중 가장 관대한(liberal)한 원산지 규정을 채택한 1985년 이스라엘과의 FTA를 살펴보면 상품이 다음 3가지 기준의 1을 충족시키면 이스라엘이 원산지인 것으로 보고 있다. 첫째, 상품이 이스라엘에서 전적으로 성장하거나, 생산 또는 제조된 경우 둘째, 상품이 이스라엘에서 그 구성부분으로 하는 물품 또는 재료를 새롭고 다른 물품으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경우 셋째,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재료의 비용 또는 가액에 이스라엘에서 수행된 가공작업의 직접비용을 가산한 금액이 당해 상품이 미국에 들어올 당시의 평가 금액의 35% 이상인 경우. 다만, 이스라엘에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미국 재료를 사용한 때에는 그러한 재료가 가액이 당해 물품의 가액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한다면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미국이 요르단과 체결한 FTA의 원산지 규정도 이스라엘과의 FTA와 대체로 동일하지만, 섬유와 의류에 대해서는 중대한 예외를 두고 있다. Rosen, *op.cit.*, p.55.

41) Hirsh, *op.cit.*, p.171(그는 보호주의적 수단으로서의 원산지규칙의 변칙적인 활용이 현행 무역제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42) Joseph A. LaNasa III, "Rules of Origin and the Uruguay Round's Effectiveness in Harmonizing and Regulating Them", *Am.J.Int'l L.*, Vol.90(1996), p.p.625.

43) 누적(cumulation 또는 accumulation)은 국가들로 하여금 상품의 원산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면서도 특정한 하나의 국가 또는 수개의 국가로의 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정책이다. 본질적으로 누적규정은 생산재료를 자유무역시대 밖에서 획득하고도 원산지 규칙을 결정하는 때에는 "국내 생산재료"로서 간주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Coyle, *op.cit.*, p.550).

Ⅲ. 우리나라 FTA의 특수문제로서의 개성공단 조항

1. 민족내부거래와 무역관세

남북한 무역거래에 GATT 제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주된 논거는 북한이 GATT 제1조상의 ‘외국’ (any other country)이 아니라는 점이다.⁴⁴⁾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영토적 적용범위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규정하고 있다. 남북합의서는 남북한 관계를 ‘특수한 관계’라고 규정하는데, 이 특수한 관계는 남북한 양자간의 관계만을 의미함에 유의하여야 한다.⁴⁵⁾ 또한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한을 민족공동체라는 하나의 지붕 밑에서 잠정적으로 양자를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민족내부의 특수관계’로 이해하여야 하는 것이다.⁴⁶⁾ 그러나, 1민족 2체제의 남북한은 1991년 UN에 동시에 가입함으로써 국제법적으로는 각기 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서의 존재를 확인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⁴⁷⁾ 이 점에서 다음과 같은 WTO의 관행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국가성과 같이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문제’ (essentially political matters)에 대하여는 WTO 자신이 결정하기보다는 UN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관행이다.⁴⁸⁾

44) GATT 제1조가 국가간의 국제무역에 적용되는데, 남한과의 관계에서 북한은 외국이 아니므로 남북한 무역거래에 GATT 제1조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이 남한과의 관계에서 외국이 되지 않는 이유로는 남한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 남북합의서에서 남북한 관계가 정상적인 국가 사이의 관계가 아닌 특수한 관계라고 규정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45) 김명기, “기본합의서상 잠정적 특수관계의 의미,” 법률신문 (1992년 3월 16일), p.14 참조.

46) 장명봉,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법적 구조에 관한 고찰,” 통일문제연구 제1권 4호 (국토통일원, 1989), pp.247-248.

47) 이영준, “남북한의 UN동시가입과 한반도의 법적 관계,” 국제법학회논총 제36권 제2호 (1991.12), p.143 참조.

48) 예컨대, 대만정부의 GATT체약국단 회기의 옵서버 자격 요청에 관한 1965년의 토의에서 당시 체약국단 의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The CONTRACTING PARTIES

더욱이, GATT 제1조의 적용을 위하여 북한이 남한과의 관계에서 국가로서 외국이냐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WTO체제에서 국가가 아닌 ‘관세영역’⁴⁹⁾(customs territory)과 ‘국가’⁵⁰⁾(country; State)를 분별하고 있으며, 국가는 물론 관세영역도 WTO의 회원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⁵¹⁾ 따라서, 서로 다른 관세 및 통상 규정을 유지하고 통상관계의 수행에서 완전한 자율성을 보유하고 있는 남한과 북한은, 상호간의 관계가 국가간의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WTO법상 적어도 별도의 관세영역의 관계가 된다.⁵²⁾

남북한과 같은 분단국가의 GATT법상 지위는 그 동안 WTO 내에서 정식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었다.⁵³⁾ 그러나, 남북한 무역거래의 규모가 다른 WTO회원국들이 관심을 가질 정도로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WTO에서 검토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동안 GATT/WTO체제에서 최혜국대우 의무에 대한 면제는 비교적 활발히 허용되었다. 다만, 의무면제가 허용되려면 WTO회원국들 중의 3/4의 찬성이 요구된다.

1991년 남북합의서는, 남북한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규정

had followed the policy expressed in Article 86 of the Havana Charter, namely to avoid passing judgement in any way on essentially political matters and to follow decisions of the United Nations on such questions. GATT Doc.SR.22/3, at 21 (1965).

49) FTA는 회원국이 될 수 있는 관세영역을 ‘통상관계 등의 수행에서 완전한 자율성을 보유한’ 영역이라고 규정한다. GATT XII:1조. 또한 GATT에서는 ‘다른 영역과의 관계에서 별도의 관세 또는 다른 통상규정’(separate tariffs or other regulations of commerce)이 적용되는 영역을 의미한다(GATT XXIV:2조).

50) GATT XII:1조; GATT I:1조.

51) 홍콩과 같은 국가가 아닌 실체도 WTO회원국이 되고 있다. 또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세동맹과 같은 지역통합도 회원국이 될 수 있다. 유럽공동체(EC)는 개별적으로 WTO회원국인 유럽국가들로 구성되며, WTO의 창립 회원국이다(GATT XI:1조).

52) 이러한 구분은 중국과 홍콩 및 마카오간의 관계에서 분명해진다. 영국의 관할 아래에 있던 홍콩이 1997년 중국에 반환된 후에도 중국과는 별개로 여전히 WTO회원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53) 동서독의 경우는 서독이 GATT에 가입할 당시 가입의정서에서 동서독 무역거래에 대한 특별한 지위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박노형, “남북한 직무역의 GATT체제에서의 문제점,” 국제경제법연구 1992년호 (국제경제법연구회, 1992년), pp.130-34 참조.

하고⁵⁴⁾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를 실시하기로 약속하였다.⁵⁵⁾ ‘이러한 물자교류’는 남북한간 무역거래가 국가간의 무역이 아님을 의미한다.⁵⁶⁾ 1992년 9월 채택된 남북합의서의 「교류협력부속합의서」(이하 ‘교류합의서’라 함)는 ‘남과 북은 물자교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남북 사이의 경제관계를 민족내부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협의’할 것을 규정하였다.

한국의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제정 95. 1. 3 법률제4858호)은 제5조(민족내부거래)는 “남북한간의 거래는 민족내부거래로서 협정에 의한 국가간의 거래로 보지 아니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이 “무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외무역법 등 무역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2. 개성공단조항

이른 바 “개성공단조항”은 싱가포르와의 FTA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며 제4.3조(특정상품의 취급) 1과 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부속서 4B에 열거된 상품이 대한민국의 영역으로부터 싱가포르의 영역으로 수입될 때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이 된다. 그 상품은 이 장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또한 원산지 재료가 된다.

54) 남북기본합의서 전문.

55) 남북기본합의서 제15조.

56) 동조항의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는 ‘trade of goods as domestic commerce’라고 영문으로 표기하고 있다. Economic Planning Board,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Status and Prospects*, (January 1993), p.20.; 그러나, 국가간의 관계가 아니라고 국내 문제를 의미하는 ‘domestic’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남북한 관계의 정확한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다. 즉, 비록 남북한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남북한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에 보다 가까운 특별한 관계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한이 상호간에 국가로서 승인하고 있지 않지만, 남북합의서는 남북한이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할 것을 규정하고(1조), 또한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기 때문이다(2조).

2.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이 조 및 부속서 4B의 운용 또는 개정에 대하여 협의한다.

또한 부속서 4B(제4.3조에서 규정된 원산지상품)에서는 상품목록(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품목번호)을 열거하고 있으며 “싱가포르가 달리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대한민국은 3월간의 서면 통보로 목록에 상품을 추가할 수 있고 열거된 상품은 개성공단과 한반도 내의 그 밖의 공업지구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양해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열거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향후 그 품목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현재 WTO 회원국이 아니라는 상황 때문에 개성공단조항의 삽입을 외국과의 FTA체결시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북한을 WTO체제에 참여시키고 남북한이 명칭의 역할을 불구하고 FTA에 해당하는 협정을 체결하는 것일 것이다.⁵⁷⁾

IV. 결 론

FTA에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완화, 수량제한 금지, 세이프가드조치, 반덤핑·상계관세, 관세통관절차 간소화 등 시장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상품무역의 자유화 및 원활화하는 규정들을 두게 된다. FTA에서는 상품무역에 대하여 WTO내국민대우원칙(GATT 제3조)을 적용하고, 상대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양허표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지 또는 감축하며, FTA의 자유화대상 품목의 최혜국대우 관세율이 인하될 경우 당사국은 FTA상의 관세율 인하에 대하여 협의한다는 내용을 두게 된다. FTA에서 타결이 가장 어려운 분야가 상품무역분야에 대한 관세인하 및 철폐이다. 주요 쟁점사항은 기본관세율 및 관세철폐

57) Lee Dongwook, “Legal Problems of the Two Koreas in the WTO Structure”, *Asian Law Review*, Vol.2(2005), pp.159-152.

폐 시기의 설정과 대상품목의 선정이다. 관세인하 이행기간중에는 양자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통하여 다른 체약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을 제한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가 향후 FTA를 체결할 때에는 다른 국가 또는 관련 국가가 체결한 FTA의 관세양허내용을 고려하여 관세철폐 카테고리, 카테고리별 양허비중 등 양허안 작성 기준 연구가 필요하며 관세철폐에 따른 수입 증가 및 국내산업 영향 등을 감안, 소관부처별로 품목별 상품양허안을 준비가 요구된다. 또한 사전적으로 양허요청 리스트를 교환할 경우를 대비하여 소관분야 양허 관심품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일본 등 선진국과 체결하게 될 FTA에서도 무역자유화에 따른 관세율의 폐지 또는 인하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⁵⁸⁾ 한국·일본 FTA에 의하여 관세가 철폐된다면 대일 수입중간재 또는 자본재를 생산하는 국내기업이나 외국기업의 경우 수입가격이 하락하므로 자본재의 수입대체 노력과 이를 위한 직접투자는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대일 수입상품의 가격하락은 수출가격경쟁력 상승으로 이르기므로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경쟁우위를 확보한 산업에서의 수출용 대한 투자는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저한 경쟁우위 산업에 대한 정부와 기업 각각의 분명한 방향성 정립이 요구된다.

58) 한국과 일본의 무역 가중평균 실행관세율은 2001년을 기준으로 각각 7.9%와 2.5%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일본 양국은 농산품 순수입국으로서 국내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비교적 높은 관세율(한국84.04%, 일본 10.6%)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피혁제품 및 신발류(11.0%), 섬유제품(9.3%) 등 공업제품에 대해서 비교적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고, 한국도 섬유/의류제품(9.76%), 신발류(6.73%)에 대해서 높은 세율을 설정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농산품에 있어서 종량세 등의 비율이 한국보다 높으며, 신발류 및 섬유제품 등의 분야에서도 종량세 등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한국·일본 양국은 당초 FTA협상에서는 GATT제24조8(b)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상 모든 무역(substantially all the trade)」을 자유화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기준에 따라, 특정 분야전체를 자유화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하면서, 동시에 양국의 민감분야를 배려하여 유연히 대처하기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일본 양국은 실제의 협상과정에서, 일본의 민감분야인 농산물시장의 시장개방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국 전체의 협상이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산화노력이 필요한 경우 산업 또는 부문별 관세인하는 가능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단계별 관세인하(Stepwise Tariff Reduction)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술적 자립성보다는 가격경쟁력 확보와 수출증대에 보다 우선을 둔다면 이들 산업 또는 부문에 대한 관세철폐는 앞당겨야 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발생한 관련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도 적지 아니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 국내적으로 영향이 크거나 민감한 품목은 관세인하 계획에서 제외시키거나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UR과 같은 관세할당제도를 유지하고 쿼터물량을 초과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향후 한국이 체결할 중국 등과의 FTA 체결시에도 고려하여야 할 요소라고 본다.⁵⁹⁾

한편, 특정 국가의 비관세 장벽 또는 비관세장벽에 관한 조치를 식별하고 이를 정량화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사실 중국, 일본등과의 FTA의 효과는 비관세장벽의 시정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국내외시장가격차의 원인과 영향을 통하여 비관세장벽으로 식별가능한 공적규제와 거래관행의 특징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FTA의 원산지규정은 특정한 상품이 어느 정도까지 당사국의 영역에서 공정을 수행하여야 FTA상의 특혜관세 적용대상이 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며 원산지 규정은 양국의 산업경쟁력과 무역규모를 근거로 하여 상호 무역의 활성화, 우회수입방지, 외국인투자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자유무역협정, 관세양허, 긴급수입제한조치, 원산지규칙, 전자상거래, 개성공단조항

59) 특정한 상품의 일시적인 반입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기도 하는데, 칠레와의 FTA에서는 그러한 일시적 반입이 허용되는 상품으로 사업목적의 전문장비, 취재목적의 음향 및 방송장비, 스포츠와 전시 목적의 장비 및 상품, 상업적 건본품 및 광고용 필름을 열거하고 있다. 그 밖에도 한국-칠레 FTA에서는 관세평가는 WTO 관세평가 협정에 의하며, GATT 제11조에 의하지 아니한 쿼터, 수입허가 등 비관세장벽은 철폐하고 당사국간 수출품에 대한 수출세 부과는 금지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 문헌】

- Benjamin Holt and Michael Waller, “International Trade and Workers' Rights: Practical Tools for Reading Labor Rights Provisions of Free Trade Agreements”, *Hum. Rts. Br.*, Vol.11(2004).
- Inbom Choi and Jeffrey J. Schott, “Korea-US Free Trade Revisited”, Jefferey J. Schott(ed.), *Free Trade Agreement: US Strategies and Priorities*,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00).
- Sidney Weintraub, “lesson from the Chile and 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Free Trade Agreement: US Strategies and Priorities*,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00).
- Andrea N. Anderson, “The United States Jordan Free Trade Agreement, United Chile Free Trade Agreement and the United States 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Advancement of Environmental Preservation”, *Brooklyn J. Int'l L.*, Vol.29(2004).
- Benjamin Holt and Michael Waller, “International Trade and Workers' Rights: Practical Tools for Reading Labor Rights Provisions of Free Trade Agreements”, *Hum. Rts. Br.*, Vol.11(2004).
- Daniel A. Zaheer, “Breaking the Deadlock: Why and How Developing Countries Should Accept Labor Standards in the WTO”, *Stan.J. L. Bus.& Fin.*, vol.9(2003).
- Ewell E. Murphy, Jr, “Charting the Transnational Dimension of Law: U.S. Free Trade Agreements As Benchmarks of Globalization”, *Hou. J. Int'l L.*, Vol.27(2004).

- Howard Rosen, “Free Trade Agreements as Foreign Policy Tools: The US-Israel and US-Jordan FTAs”, Jefferey J. Schott(ed.), *Free Trade Agreement: US Strategies and Priorities*,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00).
- John Coyle, “Rules of Origin Instruments of Foreign Economic Policy :An Analysis of the Integrated Sourcing Initiative in the U.S. 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Yale J. Int'l L.*, Vol.29(2004).
- Lee Dongwook, “Legal Problems of the Two Koreas in the STO Structure”, *Asian Law Review*, Vol.2(2005).
- Martin S. High, “Sustainable Development: How Far Does U.S. Industry have to go Meet World Guidelines?”, *ALB. L. J. Sci. & Tech.*, Vol.1`14(2003).
- Mohammad Nsour, “Fundamental Facets of the United States-Jordan Free Trade Agreement: E-commerce, Dispute Resolution and Beyond”, *Fordham Int'l L.J.* Vol.27(2004),
- Mohammad Nsour, “Fundamental Facets of the United States-Jordan Free Trade Agreement: E-commerce, Dispute Resolution and Beyond”, *Fordham Int'l L.J.* Vol.27(2004).
- Moshe Hirsch, “International Trade Law, Political Economy and Rules of Origin- A Plea for a Reform of the WTO Regime on Rules of Origin”, *J. World Trade*, Vol.(2002).
- Rahul Rajkumar, “The Central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An End Run Around the Doha Declaration on TRIPS and Public Health”, *Alb.L. J. Sci.& Tech.*, Vol.15(2005).
- Sherrilyn S. Lim, : “The U.S-Singapor Free Trade Agreement: Fostering Confidence and Commitment in Asia”, *Cal.W. Int'l L.J.* Vol.34 (2004).

Thomas J. Manley & Luis Lauredo,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in Free Trade Agreements of the Americas”, *Emory Int’l Rev.*, Vol.18(2004).

Zakir Hafez, “Weak Discipline: GATT Article XXIV And The Emerging WTO Jurisprudence on RTAs”, *N. Dak. L. Rev.*, Vol.79(2003).

Legal Implications of Tariff Concessions In Free Trade Agreements

Moon, Joon - Jo*

The Korea-Chile FTA has achieved substantial liberalization in bilateral trade in goods and services. Under the agreement, Chile will lift tariffs on more than 2,000 products ranging from automobiles, mobile phones, computers and machinery, all of which account for more than two thirds of Korean exports to Chile. In return, Korea will reduce tariffs on Chilean copper products, animal feed, wheat, wool, tomatoes and 277 types of fish. Considering the Korean export structure in agriculture, the two countries agreed to treat the most sensitive agricultural products such as apples, pears, and rice as 'exceptions to liberalization' as well as to impose seasonal tariff on grapes in a high demand season.

Korea-Singapore FTA is a more comprehensive deal - including provisions on electronic trade as well as emergency safeguards in case market share of products from one country rise too fast than the first one. Under the agreement, Singapore will lift tariffs on almost all imports from South Korea, while Korea will do likewise, except for agricultural produce and a few industrial goods.

Korea-U.S. FTA contains 24 chapters, which provide for significant reductions in tariffs on industrial and agriculture products, and include state-of-the-art commitments in competition policy, e-commerce, transparency, pharmaceuticals/medical devic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vestment,

* Fellow Researcher,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and services. When it comes to automobiles, the Korean executive branch seems to have decided it can ignore the National Assembly and decide the rate of special consumption and provincial tax to that would be applied, and at its own discretion. Korea is going to allow imports of beef with bone chips and even GMOs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KEY WORDS FTA, Tariff Concessions, Safeguard, E-commerce, Antidumping Tax, Rule of Origin, Kaeseng Complex Clause